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관계기관 고양고등학교

내 용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제2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고, 6호의 해외동반휴직은 ‘외국에서 근무·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라고 되어 있다.

또한, 제73조(휴직의 효력) 제2항에 의거,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신고하고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공무원임용규칙」 제91조의7(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르면 “법 제71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른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

또한, 제91조의9(휴직 실태점검)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휴직 공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 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고양고등학교에서는 [표]와 같이 교사 ○○○가 해외동반휴직 중 건강검진 또는 병원진료를 이유로 배우자를 동반하지 않고 국내에 67일간 체류하게 하는 등 휴직자에 대한 복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교사 ○○○ 해외동반휴직 목적 외 사용 내역

기관명	직	성명	휴직기간	국내체류 일수(A)	불가피성 인정일수* (B)	목적 외 사용일수 (C=A-B)	비고
고양 고등학교	교사	○○○	(1차) 2019.03.01. ~2022.02.28.	173	106	67	
			(2차) 2022.03.01. ~2025.02.28.	-	-	-	
			계	173	106	67	

* 불가피성 인정일수 106일: 배우자 동반 국내체류 일수 93일, 건강검진·병원진료 증빙자료 인정 일수 12일, 여권갱신 1일

【조치할 사항】

- ① 고양고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경기도 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기간제교원 채용업무 부적정

관계기관 고양고등학교

내 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에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및 제32조(기간제교원), 「경기도 교육청 공립 초·중등학교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경우 결격사유를 확인 후 채용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고양고등학교에서는 금번 학교종합감사 대상기간 동안 기간제교원 및 교육공무직 등 기타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아래 [표]와 같이 임용일 이후 결격사유를 조회한 사실이 있다.

[표]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직 등 기타직원 임용 현황

구분	성명	임용기간	결격사유 조회 여부		
			신원조회일	성범죄경력 조회일	아동학대 전력조회일
기간제	○○○	2020-10-29 ~2020-12-04	2021-02-24	2020-04-24	2020-04-24
기간제	○○○	2021-08-17 ~2021-08-23	2022-05-11	2021-08-19	2021-08-19
기간제	○○○	2021-08-24 ~2021-12-28	2022-05-11	이상없음	이상없음
기간제	○○○	2021-08-26 ~2021-08-31	2022-02-21	2021-08-26	2021-08-26
기간제	○○○	2021-08-26 ~2022-01-05	2022-05-11	2021-08-26	2021-08-26

【조치할 사항】

- ① 고양고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2명에게 ‘주의’ 처분합니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종합감사 결과 통보서

제 목 시설공사 업무처리 부적정

관계기관 고양고등학교

내 용

1. 하자보수관리부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역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제1항에 의거,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제69조(하자검사)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고양고등학교에서는 [표1]과 같이 ‘유도등 및 시청각음향 발생기 설치 공사의 12건’에 대해 2021. 8. 31.까지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관리하지 않았으며, 연 2회 하자검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하는 등 하자검사 및 관리 업

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1] 하자보수관리부 미작성 공사 내역

연번	연도	건명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보수 관리부 작성 여부	연2회 하자검사 여부
1	2020	유도등 및 시청각음향발생기 설치 공사	2020.09.01. ~ 2022.08.31.	×	확인불가
2	2020	2020학년도 NCS기반 직업계고 애완동물 관리과 대 형견사 환경개선 준공금 지급	2020.09.09. ~ 2022.09.08.	×	확인불가
3	2020	농생명교육관 GHP신설 전기공사 준공금 지급	2020.09.07. ~ 2022.09.06.	×	확인불가
4	2020	농생명교육관 GHP 신설 가스배관공사 준공금 지급	2020.09.09. ~ 2022.09.10.	×	확인불가
5	2020	점자블럭 설치 공사 준공금 지급	2020.09.11. ~ 2022.09.10.	×	확인불가
6	2020	2020 애완동물관리과 환경개선 공사 준공금 지급	2020.12.28. ~ 2021.12.27.	×	확인불가
7	2020	2020학년도 고양고등학교 실습실 (애견카페) 환경 개선공사 대금 지급	2021.01.07. ~ 2022.01.06.	×	확인불가
8	2020	2층 교무실 외 4실 환경개선공사 대금 지급	2021.02.18. ~ 2022.02.17.	×	확인불가
9	2020	2021년 LED조명 교체 관련 소방 공사 대금 지급	2021.03.11. ~ 2022.03.10.	×	확인불가
10	2021	전기전자관 3층 화장실 타일 보수공사 준공금 지급	2021.05.14. ~ 2022.05.13.	×	확인불가
11	2021	고양고 도서실 내부 환경개선공사 준공금 지급	2021.07.07. ~ 2022.07.06.	×	확인불가
12	2021	식품관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대금 지급	2021.08.15. ~ 2022.08.14.	×	확인불가
13	2021	친환경농구장 및 굴착실습장 조성공사 대금 지급	2021.08.25. ~ 2023.08.24.	×	확인불가

2.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최종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을 할 때에는 그 계약의 성질상 필요한 경우 역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거나 보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제1항에 의거, 하자 검사를 하는 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고양고등학교에서는 [표2]와 같이 ‘2층 교무실 외 4실 환경개선공사 대금 지급외 2건’에 대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별도의 최종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2]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 전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 공사 내역

연번	연도	공사 건명	하자담보책임기간	최종 하자검사 실시 여부	하자보수 완료확인서 발급 여부
1	2020	2층 교무실 외 4실 환경 개선공사 대금 지급	2021.02.18.~2022.02.17.	×	×
2	2020	2021년 LED조명 교체 관련 소방 공사 대금 지급	2021.03.11.~2022.03.10.	×	×
3	2021	전기전자관 3층 화장실 타일 보수공사 준공금 지급	2021.05.14.~2022.05.13.	×	×

3. 학교 시설공사 공공요금 징수 소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학교시설공사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알림(시설과-14334, 2008.12.15.)」에 따르면,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 학교시설사업 시행 시 시공업체가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량을 측정하되, 소규모 공사 및 별도의 계량기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전월 또는 전년도 사용량과 비교하여 공사금액 대비 0.11% ~ 0.14%에 해당하는 공공요금을 도급자에게 징수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여야 한다.

그런데 고양고등학교에서는 금번 학교종합감사 대상기간 동안 공사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아래 [표3]과 같이 3건의 공사계약에 대하여 전기 및 수도 요금 합계 금142,290원을 징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3] 공사계약 공공요금 미징수 현황

[단위: 원]

회계 연도	구분	건명	계약체결현황			비고
			대금 지급일	공사금액	공공요금 미징수액 (0.11%)	
2020	공사	2층 교무실 외 4실 환경개선공사	2021-02-19	20,840,000	22,920	원단위 절사
2021	공사	식품관 및 체육관 옥상방수공사	2021-08-30	49,700,000	54,670	원단위 절사
2021	공사	친환경농구장 및 굴착실습장 조성공사	2021-09-06	58,825,830	64,700	원단위 절사
합계					142,290	

【조치할 사항】

- ① 고양고등학교장은 관련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자 6명에게 ‘주의’ 처분하며, 미징수한 공공요금 142,290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